##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49 발의연월일: 2021. 12. 22.

발 의 자:김병주·김병기·이병훈

이형석 · 안규백 · 오영환

김진표・홍영표・전용기

전혜숙·설 훈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실급식 사태에서 보듯이 여러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군 장병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사용되어야 하는 물품의 조달을 제한하고 있어 장병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보장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 음.

중소기업 육성 등 국가 정책은 필요한 부분이나 이는 별도의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 장병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의질을 저하시켜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이는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책무를 다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에서 규정한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법에 국가가 장병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하여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을 조달할 때는 여타 국가 정책적 목적보다는 장병 복지를 취우 선 목적에 두고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 하여 의무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생활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장병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장병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장병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장병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u>한다.</u>